

## 행정처분기준(제19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처분을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,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(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·제2호·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수 있으며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(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약취검사기관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기술진단 업무 또는 약취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

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6)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### 가.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1)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	조업정지 명령			
2)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)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) 가) 외의 경우	법 제11조	개선명령  개선명령	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	조업정지 명령	
3)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가)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)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	법 제13조	사용중지 명령  폐쇄명령			

4)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	법 제13조	경고	사용중지 명령		
--	--------	----	---------	--	--

비고

1. 1) 및 2)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.
2. 3) 및 4)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.
3. 2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.
  - 가. 2)가)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)나)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: 2)나)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.
  - 나. 2)나)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)가)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: 2)나)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나. 기술진단전문기관 관련 행정처분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	법 제16조의6제1항 제1호	등록취소			
2)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16조의6제1항 제2호	경고	등록취소		
3)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6조의6제1항 제3호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	
4) 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	법 제16조의6제1항 제4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
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				
5)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) 법 제16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)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) 영 제7조의2제2항제7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16조의6 제1항제5호	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등록취소	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
6) 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16조의6제1항 제6호	등록취소			
7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	법 제16조의6제1항 제7호	등록취소			

다.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	법 제19조	지정취소			

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제1항제1호				
2)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가)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나)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다)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라)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2호	지정취소  경고  지정취소  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    업무정지 3개월
3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4)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4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